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5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4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3. 11. 26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수강생의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징수규정 신설 - 별표 1

단 위	운 영 과 정	기 준 금 액	비 고
강 좌	10시간 이하 프로그램	50,000원 이하	○ 실습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○ 1인 1프로그램
	10시간 초과 프로그램	100,000원 이하	

-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 및 수강료 면제사항 규정 - 별표 2,3

- 「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평생학습관에 대한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 및 면제대상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7조에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·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 등에 대한 기준 및 근거, 무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 - 안 제18조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등의 면제대상 및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,
  - 안 제19조에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  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.
-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고,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제3항에 “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되어 있는 등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1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수강생의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징수규정 신설 - 별표 1

단 위	운 영 과 정	기 준 금 액	비 고
강 좌	10시간 이하 프로그램	50,000원 이하	○ 실습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○ 1인 1프로그램
	10시간 초과 프로그램	100,000원 이하	

나.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 및 수강료 면제사항 규정 - 별표 2,3

다. 「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등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10.17~11.6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노력한다”를 “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”를 “제16조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”를 “영등포구 평생학습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”를 “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구의회 의장이”를 “구의회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인정하는 자”를 “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해촉)”을 “(위촉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해촉을”을 “위촉해제를”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기타시설”을 “그 밖의 시설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장 제17조부터 제5장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·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 또는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**익일까지**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.

제18조(수강료 등의 면제)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
5. 「노인복지법」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19조(수강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수강포기 등

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자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별표1, 별표2, 별지 제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기준(제17조 관련)

단 위	운 영 과 정	기 준 금 액	비 고
강 좌	10시간 이하 프로그램	50,000원 이하	○ 실습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 ○ 1인 1프로그램
	10시간 초과 프로그램	100,000원 이하	

[별표2]

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(제19조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	반환금액	비 고
강좌 수강료	1.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	이미 낸 학습비 전액	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	2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	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	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	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	
	3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	
	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	



[별지 제1호 서식]

<b>수강료 반환 신청서</b>				
신청인	강좌명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반)		
	성 명		생년월일	(남,여)
수 강 료	금	원 (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수강기간				
반 환 수 강 료	금	원 (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입금통장	거래 은행		예금주명	
	계좌 번호			
반환사유			반환기간	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
붙임서류	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			
<p>위와 같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50px;"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</p>			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평생교육사”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평생학습의 진흥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<u>노력한다</u>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<u>법 제16조</u>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,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사람을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평생학습의 진흥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----- ----- <u>제16조</u>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
제5조(설치)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~ 4. (생략)
5.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구성) ①、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
- 2.、3. (생략)
4.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④ (생략)

제9조(해촉)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5조(설치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영등포구  
평생학습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-----  
-----.

제6조(기능) 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 
----- 회의에 부치는 ----

제7조(구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해당하는 사람 -----  
-----.

1. 구의회에서 -----
- 2.、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 
----- 인정하는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촉해제) -----  
----- 위촉해제-----  
-----.

1. ----- 그 밖의  
-----
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3. (생략)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4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8. (생략)

9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직원 배치) 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 지정)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·단체, 공공시설,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·이용할 수 있다.

<신설>

2. ----- 위촉해제를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-----  
---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기능) 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15조(운영직원 배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사람으  
로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평생학습 협력기관·시설 지정) -----  
----- 그 밖의 시설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

제17조(수강료의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·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

〈신 설〉

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수강료 또는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익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.

제18조(수강료 등의 면제)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
- 5. 「노인복지법」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

〈신 설〉

제17조(성인문해교육 실시 등) ① (생략)

② (생략)

1.~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8조(협력 및 협조 등) ① ~ ② (생략)

제19조(지도·감독) (생략)

제20조(시행규칙) (생략)
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

제19조(수강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수강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성인문해교육 실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~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협력 및 협조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지도·감독)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